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0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김선교 · 강승규
조정훈 · 김상훈 · 나경원
김민전 · 곽규택 · 김승수
박상웅 · 김재섭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%로 규정하고,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부터 600억원까지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(55%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·완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,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%에서 40%로 인하하고,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%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8

조의2제1항 및 제26조).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“300억원”을 “300억원[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 이 조에서 “국가전략기술기업”이라 한다)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360억원]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400억원”을 “400억원(국가전략기술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480억원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600억원”을 “600억원(국가전략기술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720억원)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<과세표준>	<세 율>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
10억원 초과	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업상속공제 및 상속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u>300억원</u>	<u>300억원[「조세특례제한법」</u> <u>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</u> <u>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</u> <u>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</u> <u>하는 기업(이하 이 조에서</u> <u>“국가전략기술기업”이라 한</u> <u>다)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360</u> <u>억원]</u>
2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<u>400억원</u>	2. ----- ----- <u>400억원(국가전략기술기업을</u> <u>상속하는 경우에는 480억원)</u>
3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 하여 경영한 경우: <u>600억원</u>	3. ----- ----- <u>600억원(국</u> <u>가전략기술기업을 상속하는</u> <u>경우에는 720억원)</u>
② ~ ⑩ (생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상속세 세율) 상속세는 제 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 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“상속세산출 세액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	제26조(상속세 세율) 상속세는 제 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 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“상속세산출 세액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<과세표준>	<세 율>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
30억원 초과	10억4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)

<과세표준>	<세 율>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	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
10억원 초과	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